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의 전문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소 신설
나. 전국(장애인)체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국체전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2. 주요내용

- 가. 사업소 추가 신설(안 제20조)
: 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사업소 설치 및 소관사무 신설
나. 사업소 명칭 및 위치 변경, 신설(안 별표 2)

1) 구미시서울사무소 위치 변경

(당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2길 30 (동선동)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여의도동)

2)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 및 위치 신설

- 사업소명 : 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 위 치 : 구미시 상모동 156-1번지 일원

- 다.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안 부칙 제2조)

: 전국체전추진단 존속기한 : 2020. 5. 31 → 2021. 5. 31(1년 연장)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가. 역사자료관의 관리·운영

나.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다.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라. 간행물의 제작·배포

마. 역사자료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판매

바. 그 밖에 역사자료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0년 5월 31일”을 “2021년 5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업무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업무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행정위원회 : 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된 조례로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이 조례 시행 후 사무가 신설·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 부서의 장, 부서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 부서의 장, 부서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8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구미시평생교육원	구미시 산호대로 243 (공단동)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구미시 금오산상가길 12 (남통동)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구미시 산책길 51 (원평동)
구미시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여의도동)
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구미시 상모동 156-1번지 일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20조(소관사무) ----- ----- -----. 1. ~ 7. (현행과 같음) 8. <u>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u> <u>가. 역사자료관의 관리 · 운영</u> <u>나. 박물관자료의 수집 · 관리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 · 교육</u> <u>다.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u> <u>라. 간행물의 제작 · 배포</u> <u>마. 역사자료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 · 판매</u> <u>바. 그 밖에 역사자료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조례 제1237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국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u>2020년 5월 31일까지</u> 로 한다.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 ----- <u>2021년 5월 31일</u>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④ 생략

소 관 부 서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김 용 보
	담 당	강 유 현
	담 당 자	양 상 병 (480-6773)